

제371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11월14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지방행정동우회법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6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69.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70.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7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72.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73.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7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7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계속)
8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8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계속)
86.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87.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8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6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6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6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6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6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23.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18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23.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32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32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3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32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35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35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35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35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35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35
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35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9)	35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35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35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35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35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38)	35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35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36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36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36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36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36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36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36
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36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36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36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36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36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36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36
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36
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36
5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2.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36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36
6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은 지방세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과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전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전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이하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의사일정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것을 안전으로 해서 심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심사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간의 심사 결과와 논의할 사항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의 소위에 걸쳐서 합의된 내용들을 소위 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조금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관련하여 인재근 의원안에 있는 과학적 연구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연구, 통계작성에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한다는 등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일부 개진되었습니다만 인재근 의원안의 과학적 연구 자체의 정의 규정을 보시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이렇게 적시

가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는 것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현행법보다는 확실히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확정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산업적 연구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산업계의 관심이 지대하고 또 산업계의 의견도 좀 반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념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언론인 여러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계시면 퇴장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인들 안 계십니까?

○입법조사관 정연수 나갔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한정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소위에서 많이 논의된 법안 중의 하나이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처리하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그동안에 EU의 GDPR 적정성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던 만큼, 이 문제가 인재근 의원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많이 좁혀진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지난 소위 검토에서 권은희 위원께서 몇 가지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권은희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재옥 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제가 산업적 목적에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이진복 의원님 안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저희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연구 정의 규정에 산업적 연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부가적으로 또 다시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을 말씀드린 상황이기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만 만일 위원님들께서 꼭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넣어 주시면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윤재옥 위원 정의 조항에 민간 투자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이렇게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정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는 이런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또 미래의 어떤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굳이 그걸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이 법안을 제시했고 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대세에 지장이 없고 어떤 개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그걸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 이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이 포함되도록 이걸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큰 이론이 없으면 명시해서 그렇게 통과……

○**김한정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악용이라든지 또 이런 과학연구를 표방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제도 시행 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는 산업적, 상업적 개인정보 이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는 분명히 전제돼 있고, 한편으로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장치, 제동장치를 부여하자는 게 입법에 반영돼 있는 만큼 굳이 이 용어를 넣어 가지고 법의 취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은 도리어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저는 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

정부의 의견은 자꾸 합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간에 논의되어 왔을 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산업적, 상업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판단도 들어 보고 지금 원안 올라온 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재옥 위원** 이것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합의 처리하기 전까지 의견이 접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장은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해도 되고 또 산업적 이것을 굳이 위원들이 여기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그 취지에 산업적 연구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요, 상업적 목적 이것은 좀……

○**윤재옥 위원** 상업적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아, 지금 그 주장은 아니시다 이거지요?

○**윤재옥 위원** 예,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입니다.

○**김한정 위원** 포함한?

○**윤재옥 위원** 예, 포함한. 그냥 명확하게 ‘산업적 연구’라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상업적 목적’은 빼고 ‘산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윤재옥 위원** 예,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 자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윤재옥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그렇게.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처럼 산업적 목적 등을 지금 현재 이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윤재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계속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소위에서 보호위원회가 보호와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조사·처분권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보장되기 어렵고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데이터 활용의 개별 영역에서의 특수성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 건 관련해서는 당시 권은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권은희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적 감독기구로 하면 기본적으로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지금 외국의 사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에서도 독립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처분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자꾸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좀 수렴해 본 결과……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현재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이걸 9명 정도로 하고 대통령께서 4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5명을 추천하는데 국회는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 이렇게 하면 여야가…… 그래도 6명이 여권입니다. 이 정도로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에서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개별 부처에서 여전히 담당하는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이후에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개보법 개정안에 따라 망은 망법에 있는 사항,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에 있는 사항 중에 일반 상거래 기업에 대한 것은 다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일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관련된 일부…… 개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법에는 다른 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고 다른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개보위가 독립해서 개별 부처 장관이 개별법에 따라 갖고 있는 부분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 간의 충돌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정하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거에 다 갖고 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오남용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것은 개별법에 다 규정이 있고요.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희 개보법에 따라서 규정을 또 받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잠시만요. 이게 위원 구성을 9명으로 늘리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가 되는데 국회 추천 몫을 5명으로 하고 거기서 여당 2, 야당 3……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에 있어서 최소한 동수로 구성하는 사례는 있지만 야당 추천 몫을 더 많이 하는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오늘 윤재옥 위원님께서 처음 제기하신 안이어서 우리 당에서 이것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저희가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의견들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성태 위원** 전에는 동수였는데 지금은 다당제가 돼 가지고……

○**윤재옥 위원** 그래도 대통령 몫으로 추천 4명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김성태 위원** 전에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양당 체제니까 동수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추천이 끝났는데 지금은 위원 추천을 하면 가령 야당 몫이 2명이 오더라도 자유한국당은 1명밖에 없지.

○**김한정 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법안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법 정신을 가지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윤재옥 위원** 하여튼 김병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의견을 모아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제시한 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모아 봐 주세요.

○**김병관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원래 인재근 의원님 안에서 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이게 정치로부터 조금 독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국회 추천 몫을 사실 뺐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국회 추천 몫을 5명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통령 몫 4명, 국회 5명 하는 부분이 최초로 인재근 의원님이 안을 만들었을 때 위원회 구성 취지랑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 추천 몫이 없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국회 추천 몫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든 저는 국회 추천 몫이 과반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견을 좀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일단 10페이지는 잠깐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벌칙 부분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규정돼 있는데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의 발생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수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벌칙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범인의 대표자 및 범인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범인이 아닌 사업자와 단체, 개인, 공공기관 등에는 과징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들을 감안해서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제34조의2의 규정에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과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고요.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5억 원으로 돼 있고, 인재근 의원안 중에 개정안의 방법 이관 규정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가명정보 특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각각 과징금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이나 일정 가액 중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안은 이 건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CCTV 정보에 관한 형벌 조항인데 이것을 다 없애서 과징금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이럴 경우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CCTV정보를 고의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까지 형사 처벌을 배제할지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이 지금

정부로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없는 비영리단체, 개인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망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소위 망법의 규정을 받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형벌과 과징금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형벌이 없게 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종합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조항들을 장기적으로 미세 조정을 잘해서 과징금으로 바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형벌을 일거에 다 없애서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정부에서는 이 벌칙 조항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까? 현행법대로 하는 게 좋겠냐?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현행법대로 두는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금 김병관 위원님께서 이걸 제안하시면서 EU의 사례를 많이 참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EU에서도 가급적 형벌보다는 과징금으로 가는 추세에 있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 검토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서 이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관리 부분은 더 엄격하게 보안이 갖춰져 있어야 활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김병관 위원** 제가 정부의 입장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으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형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 버리면 그 안에는 고의로 안전성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도 결국에는 형벌을 면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고의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지금도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제가 어쨌건 제안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형벌이 아닌 과징금·과태료로 전환을 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부분은 형사 처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위원님 안은 제가 보고받기에는 또 이해하고 있기에는 형벌을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형벌을 유지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거에 형벌을 다 없애서 과징금으로 넘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김병관 위원** 어떤 문제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자까지…… 그런데 그 안전 조치 대상은 제가 읽어 드린 대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CCTV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들을 고의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형벌을 안 할 것이냐, 즉 과징금만 매길 것이냐에 관한 판단을 해야만 형벌을 전체적으로 없애서 과징금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부분에 관한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개인정보처리자.

○**김병관 위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으로 바꾸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고 그것을 실무자 책임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제가 법안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형사 조치가 아닌 과징금으로 바꾸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두 번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가 추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것, 형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체계적으로 망법과의 불균형성 문제, 그다음에 고의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매출액이 없는 비영리단체나 개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김병관 위원** 제가 볼 때 매출액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이너한 문제고요. 그거야 내용을 합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하고 똑같이 그냥 5억으로 과징금을 통일시키든지 하는 부분 그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제가 전체 회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보고가 필요하고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EU GDPR을 말씀드리면서 EU GDPR은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형벌을 없애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게 충분한 연구 없이 그렇게 결정될 일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잘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안전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안전성 부분에서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안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의성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법적 판단

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모호한,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켜 놓는다면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지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대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옥 위원** 장기적으로 김병관 의원님 안 쪽으로 방향을 가야 좀 체제가 잘 잡혀요.

○**소위원장 이채익** 오늘 김병관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줌……

○**김병관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현재 이 법은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넣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낸 이 의견은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방통위에서 이렇게 해서 입법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고, 제가 정부한테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의견이 나온 게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그리고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한 1,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고 그 이후로 지금 차관님께서 추후 종합적으로 어떤 형벌이나 과징금 이러한 체계를 재검토하자는 말씀을 주시는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번도 제대로 검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전체적인 형벌 부분이나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재옥 위원** 지금 위원 구성에 관해서 합의가 되어야 이게 의결이 가능……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까지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한번 수석님이 정리해 보세요.

○**김병관 위원** 잠깐만, 제가 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 소관사무

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 온 게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정통망법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인력의 양성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인재근 의원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위원회 소관사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견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보면 현재 인재근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제7조의8 소관사무 1항의 2호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을 또 소관사무로 하고 있어서 이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신지?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인재근 의원님 소관사무 규정 중에 6호에 보면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것은 크게 보면 정책 등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지원·보급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중에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보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시면 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7항을 하나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에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7호를 8호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정통망법에 있던 내용 중에서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 수정을 하면서 빠진 부분인데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방금 김병관 위원님 제안에 위원님들……

○윤재옥 위원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먼저……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인재근 의원님 안에만 없을 뿐이지 소병훈 의원님 안, 송희경 의원님 안, 변재일 위원님 안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보급 등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 구성 이런 것 다 정리하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채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잠시 보류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우리 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한 바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간의 심사 결과와 논의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자료 3페이지에 그동안의 논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요.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 완화와 관련되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임 제한 완화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대신에 감독·관리 강화 방안 같은 것이,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

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사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지금 정부 입장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우리가 토론하면서 연임을 폐지하자는 부분이 오제세 의원안이고, 그다음에 전혜숙 의원안은 1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저희는 법안을 여기에 제출하면 항상 이 사안들이 다 입법 사안이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견을 물어보셨으면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문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이 문제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오제세 의원안과 전혜숙 의원안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한국당은 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혜숙 위원장안이 나름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국당의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의 쟁점은 1회를 연장하자는 전혜숙 의원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의 생명력은 재산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새마을금고는 농협보다 점포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자금을 10원 한 장 안 받고 53조라는 막대한 서민금고를 지금껏 형성해서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는 국가 정책 중에서 일반 농협이나 이런 금고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국책 사업 일들이 많이, 햇살론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등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묶어 놓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국가에 그리고 서민금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요구하는 한번 연임 정도의 전혜숙 의원안은 저는 이 시기에 마땅하다 또 이것이 정히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정도 해 보고 또 거기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주는 것이 저는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무작정 반대로 묶어 놓으면 그만큼 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나 금고 활동이 상당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기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입니다.

이 법이 5년 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지요. 그래서 2005년에 재선까지 하는 새마을금고법이 되어서 그때는 재선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될 때, 즉 2010년 정도가 되면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더 해서 3선까지 하는 법이 또 통과된 겁니다. 그 법이 통과돼서 3선이 끝나는 시점인 지금 2019년이 되니까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해서 4선까지 되는 법이 나온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2030년 초반이 되면 한 번만 더 하자는 법, 즉 다섯 번까지 하자는 법이 또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차라리 이 법의 입법 취지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왜 연임 제한을 두느냐, 연임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것과 가치 논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번하는 것을 네 번으로 한 번만 더 하자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연임 규정을 없애자라는 가치 논쟁이 된다면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있고 또 위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그 논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논쟁인데 지금 놀랍게도 세 번 하는 것을 네 번 하자라는 법이에요, 이게.

일반화를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도 크게 나왔던 모 이사장이 사실은 2012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하자라는 그 법이 통과되면서 25년째 하고 있다가 지금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형 받고요. 그 금고 직원까지도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건입니다.

즉 무슨 얘기나 하면 임기가 끝날 때쯤 해서

또 연명형 법안이 계속 들어오는 것, 저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새마을금고법, 지금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심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이 개정에 따라서 우려되는 우려점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입장을 표현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토론이 계속 된다고 해서 지금 그게 서로가 상호간에 설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데 표결로 하실 거면 표결로 하시겠다라고 방침을 정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잠깐 양해 말씀 드리고 비우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또……

○**김성태 위원** 될 수 있으면 표결을 안 하는 게 소위지.

○**김한정 위원** 표결 소위를 따로 하나 만드시지요.

○**김성태 위원** 소위는 원래 머리 맞대고 협의해서 조정, 이해, 타협을 시키는 건데 표결하면 안 돼.

○**윤재옥 위원** 저는 표결 처리 반대입니다. 또 여야 간에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

○**윤재옥 위원** 국회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고 협상을 해야지.

○**김영호 위원** 이 문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야당의 지도부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논의든 표결이든 통과가 됐을 시에, 또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기에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공교롭게 막상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에 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

랬어요. 발의가 되면 논란이 더 많아지고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내부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입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지요?

○**김영호 위원** 정리가 잘 안 되는……

○**김성태 위원** 그런 한계가……

○**홍문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영호 위원**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이 좀 내주 세요.

○**홍문표 위원** 아니, 우리 야당은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법안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홍문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해숙 의원안을 놓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몇 번 토의를 했어요, 또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면 이것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안 내고 전해숙 의원안에 동의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오제세 의원과 전해숙 의원이 마침 공교롭게 여당 의원들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끼리의 안이 지금 채택도 안 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당론인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당에서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이 언제까지 그냥 표류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가상의 어떤 논리를 놓고 다섯 번 하면 또 여섯 번 하고, 여섯 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손자까지 하는 법이나 하면 그건 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 문제를 묵살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예산이 안 들어간 자립적으로 만들어진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53조는 사실 피와 땀의 결실체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다른 금융회사는 수십 조, 수백 조씩도 갖다가 쓰면서 국가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몇 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꼭 집어 가지고 이게 무슨 비위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 진정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해숙 의원을 엇그저께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자기는 기본적으로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또 여기에 대

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당 간에 첨예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있고 제도적인 개선 문제 갖고 충돌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숙성할 만큼 했으니까 이 문제는 나는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글썄, 투표라는 것이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자꾸 끝면 끝수록 진실성 문제는 덮어지고 부작용의 문제를 사례를 들어서 마치 새마을금고가 부정부패의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서 인사 문제, 선거의 규정 문제가 지연된다면 저는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생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바로잡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새마을금고를 부패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서 분명히 얘기했고 그분이 사실은 임기 연장이 되면서 25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서민 금융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사회에 기여하시고 국가경제에 기여하시는 분들을 매도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새마을금고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비상임으로 회장이 바뀌었고요. 전문경영인 체제가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중앙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번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법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큰 틀의 가치 논쟁이 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다 된 분을 한 번만 더 하자는 그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할 필요도 있고 또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연임 제한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연임 제한을 하라고 하는 측면

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여론조사하면 국민들은 연임 제한 쪽으로 여론이 몰릴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의 연임 제한 규정 철폐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감대를 넓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당의 법안이 있었고 또 여당의 전해숙 의원님이나 오제세 의원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여당과 전해숙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의 법안을 철회하면서까지 우리가 여당과 뭔가 공통분모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당히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님들도 우리 법안소위 위원에 꽤 들어가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 오히려 저는 전해숙 의원님 안이 능력과 경험을 살린다 또 전문성을 절대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제 또 아무래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한 분들이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연임을 하면 기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계속하는 걸로 아는 착각에 자꾸 빠지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경쟁이고 한 지역에도 여타 새마을금고하고의 경쟁 체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제대로 안 된다는지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100%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도태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연임 이것을 풀어 준다고 해도 임기 만료 180일 전에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기존 이사장이 다시 연임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와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이삼십 % 정도만 당선되지 한 육칠십 %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20년, 25년, 30년 그 한 케이스에만 매몰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논쟁을 우리가 좀 더 투명화하고 공개화하고 또 실상을, 오늘 새마을금고중

앙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하고 해서 이걸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입장도 한번 좀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병관 위원 그건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김성태 위원 그 입장을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새마을금고 관계자 좀 오라고 하세요.

○김병관 위원 잠시만요, 김병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소위 때도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고 사실 전체회의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들어 보자 이거야.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고.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도 속 시원히 한번……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리 와 보세요. 지금 성함하고 직책하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임 중인 전무이사 김기창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김기창 전무님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입장이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예.

○소위원장 이채익 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안 나왔어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지방 일정이 있어서 제주에 가 계십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질문할테니까 추후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 한번 질문해주세요.

○김민기 위원 질문을 해요?

○소위원장 이채익 예, 좀 하십시오.

○김민기 위원 전무님!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예.

○김민기 위원 이 법이 왜 9월 달에 제출됐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늘 여기

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 왜 그 전에는 발의가 안 됐다가 그 이후에 발의됐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10년에 개정되고 지금 임기 말입니다, 3선이 되신 분들이. 그러면 그 전부터 했어야지요.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 이럴 때 미리미리 해 놔야지요. 이게 지금 닥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늦은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 중앙회장 선거 시에 후보자가 7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아무래도 전국을 돌면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새마을금고나 중앙회에 뭐가 중요한지를 듣기 때문에 후보 공히 전부 다 이 법안에 대한…… 이 사장들이 한 65% 이상 갑자기 퇴진함으로 인해서 오는 조직의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박차훈 회장님만 공약을 건 게 아니라 회장에 출마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 공약을 걸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좀 늦은 거고요.

작년에 그런 취지를 인식해 주셔서 오제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1차 하셨고요. 전면적으로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국회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올해 다시 조정안으로 전해숙 위원장님께서 법안을 추가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 중에 연임 반대한 후보도 있었지요? 전부 다 찬성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일곱 분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고요.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빅3 세 분은 다 공약을 걸었고요.

○김민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퇴진한다’…… 이것은 법에 세 번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라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에요. 퇴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무슨 갑자기 퇴임함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합니까?

이게 지금 엉겨 있는 거예요, 행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3선 하고 끝나는구나,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 낸 것이지 갑자기 퇴임하는 게 아니지요. 2010년에 만든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각났니까, 갑자기 퇴진하고? 이것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갑자기’라고 표현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갑자기’라는 의미는, 그때 법안 시행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고 또 금고에서 그런 요구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점점 도래가 되면서 저희가 판단해도 많은 리스크가 잠재해 있고 또 금고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65% 정도 교체라고 했는데 그게 연임했을 때 65% 정도 교체된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지금 연임 제한에 걸리는 사람하고 또 실질적인 임기가 도래해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750명입니다. 저희 전체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1304개인데 그중에 747명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중에 당연히 퇴임하는 사람이 한 4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하면 자정 기능으로 자체적으로 아웃되는율이 58.7%였습니다. 10명 중에 한 6명은 지금 퇴진을 하고 그중에 금고 경영을 잘하거나 나를 지역사회나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사장이 한 40% 정도 다시 재임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에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1안을 오제세 의원이…… 그 공약을 냈었던 부분, 문제성을 제기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계속 이 문제를 의견 조율하고 법안을 만드는 데 오제세 의원이 앞장서서 했었는데 전면 폐지라는 것이 너무 무리이고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데에서 2안을 만드는 데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갑자기 준비한 것은 아니고 오세재 의원 법안이 국회에 오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의원님들께 좀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더 늦은 것 같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기능과 관련해서 여당 일부에서 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얘기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나 지금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마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법안을 한번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전국 새마을금고인들의 의견 수렴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지 저희의 정체성이 지역사회에 뿌리박은 협동조직인데 금융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 대 70 정도로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런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정부에서 합의를 해서 저희 새마을금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한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는 것은, 만약에 이 부분이 입법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기존 연임 제한에 묶여서 진출할 수 없는 분들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의 반발 강도나 그런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계층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에 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총인원은 우리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 3만 6700명 중에 562명입니다. 극히 적은 숫자이고 또 적은 숫자의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내년엔 일몰로 임기 만료되는 일부 이사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순수한 입장은 어차피 선거를 해도 58.7%가 바뀌는데 그분들을 한 번 더 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조직의 수장들이 일시에 반 이상 바뀌면서 새로운 사령탑으로 바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금고나 중앙회 입장으로서는 어떤 상당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좀 연착륙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김기창**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지금 표결을……

○**김성태 위원** 계속 심사를 해요.

○**김한정 위원** 숨 좀 돌리지요. 점심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새마을금고법하고 같이 바로 심사하고, 그 사이에 간사하고 절충을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할까요, 좀 더 할까요?

○**김한정 위원** 한 개 더 할 수 있지 않아요? 동우회법……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잠시 보류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11시46분)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심사 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6만 2000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퇴직 공무원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에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 회원과 동우회 운영 등 동우회 내부에 관한 자율적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 의견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이 법의 사업 범위를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한정할 경우에는 이 법 개정안 내용을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공익사업에 한정을 해서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다만 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루는 정부가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감안하셔도 이 부분이 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뒷부분까지는 아직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아마……

○김한정 위원 이 문제는 좀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야당 위원님들도 고집을 하지 않으신다면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나 번.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재정 지원에 관련된 것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6조에서 규정하고요. 동우회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사 입법례인 5개의 현행법 규정을 살펴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유사 입법례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특히 거기의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현행 보조금 관리 체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법하고 경우회라든지 소방동우회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지금 현재 경우회나 소방동우회나 이런 것들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특수 직역에 있는 공무원들로서 일반직과는 별도로 구분돼서 규율된 측면도 있고요. 또 경우회나 소방동우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때의 현장 경험들을 살려서 퇴직 후에도 특별한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나름대로 특정 사업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약간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비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동우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지방행정 발전 또 공익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아요? 지방행정동우회 쪽하고 정부 쪽하고 의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보고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법안에 관한 정부 의견을 드릴 때는

다른 유사 입법례와의 관계라든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이 법안에 그렇게 제안은 돼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받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처럼 지방행정동우회가 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사업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 나머지 규정은 설립 목적이라든지 정관, 임원의 구성 등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사실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어려운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로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이 부분을 방금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삭제하고 공익적인 활동 지원 이 정도로 규정을 명확히 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어떻습니까?

○윤재옥 위원 가입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됐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가입 대상은 지금 법안 원안에는 지자체 또는 행안부의 퇴직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요. 회원 자격을 ‘지방행정에 종사한 자’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의견을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결론은 정부에서는 현재 이 개정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랑 연계해서 지방행정동우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방행정동우회가 앞으로 활동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를 두기 위한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좋은 공익사업의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바로 차관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도 6조의 사업 범위만 공익사업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

면 다 수용이 가능한가 이걸 내가 물은 건데……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공익사업에 한정해서 지방행정동우회의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법제정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대상을 지방행정공무원에 한하고 또 재정 지원 부분도 공익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정부는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법안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이 부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대상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만 하는 선에서……

○김한정 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방행정 공무원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싶는데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좀 해 보면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은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조례로써 자치단체하고 좀 진행을 해 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김한정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김한정 위원 아니, 그건 없어도 돼요. 왜 안 돼요?

○소위원장 이채익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김한정 위원 아니, 이걸 꼭 동우회라는 전국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예를 들자면 ‘울산행정동우회’ 해서 친목단체로 만들어서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걸 전국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

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로……

○김한정 위원 그건 아니지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걸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이 돼야 되니까 법률적 근거는 필요한데……

○김병관 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도 각 지방별로 지방행정동우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방동우회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뭔가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맞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런데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굳이 특별히 따로 법안을 만들어서 단체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러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지금 약 6만 3000명의 회원을 가진 소위 민간 조직으로 구성되어 벌써 운영되고 있고요, 중앙회라든가 16개 시도의 지회·분회 등을 가진 일단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자체 회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 저는 왜 이런 법안이 제시됐는지까지 속 내용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았고……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법이 제출되고 통과를 바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무 가입 조항하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의무 가입 조항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의무 가입 조항은 없습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내용이 의무 가입처럼 써 있는데 의무 가입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그렇다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자격 요건입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자격인데……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회원의 자격이 지방행정에 종사한 자로 되어……

○김병관 위원 어쨌거나 정부 재정을 바라기 때

문에 지금 이게 제출되고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동우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국가 재정이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그럴 만한 사업들이 또 있나요, 혹시?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저희는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업은 사업별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공익사업이라고는 해 봐야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할 때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타는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지요.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것은 예단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국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가 재정의 투입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김병관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이 부분도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오전에 잠시 심사를 보류하였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독립적인 행정기관화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그리고 권한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견이 존재해 왔었는데, 그동안 권한과 관련해서 이 독립적인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제정권, 일반적인 감독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권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모두 갖는 것은 권한의 집중으로 견제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권한을 나누는, 조사·처분 권한은 기존의 위원회에서 하게 하는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이 두 가지의 권한을 나누는 것에는 추가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네 가지 권한을 다 행사한다면 그만큼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견제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정안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회의 자격 요건들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도의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정도 수준의 엄격한 자격 요건과 국회 추천 등으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활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리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개정안은 ‘통계’, ‘연구’, ‘공익적’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산업적이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인데 이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목적의 어떠한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법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과 관련해서 안정된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연구 그리고 통계작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는 것을 법문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소위에서 토론했던 내용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처분권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호위가 향후 데이터산업이나 개인정보 보호 양쪽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필요하다면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한 안으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인재근 의원안이 오히려…… 기존의 수정 의견에는 현행법의 자격 요건을 그냥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법보다는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 하면 오히려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추천을 포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셨고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관련해서는 누차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저희의 의견도 그렇고 기존의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 해도 어쨌든 산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와 같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재근 의원님 안이 EU의 GDPR과 문언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나 가장 유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안이 오히려 EU의 적극적인 심사를 받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수용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윤재옥 위원** 차관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하면 상임이 몇 명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인재근 의원님 안에는 상임은 둘입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고요. 상임이 2명이라는 말은, 두 분은 정무적이기 때문에 임명권은 대통령께서 가지시게 됩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이걸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분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기존에 공정위도 부위

원장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을 참조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정부 입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이 두 분만 상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격 요건은 인재근 의원안에 동의하시는지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3급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 10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임원 재직이나 이들 기관 및 단체 추천,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 이것을……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조금 강화된 안입니다.

○**윤재옥 위원** 인재근 안을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은희 위원** 위원 자격을 인재근 의원안으로, 수정안으로 가시는 겁니까?

○**윤재옥 위원** 예, 그렇고요.

오전에 권 위원님이 안 계실 때 9명으로 하고 대통령께서 4명 추천, 5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여당 2, 야당 3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정도에까지 갔고요.

지금 남은 부분이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게 포함되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위원 구성은 우리 당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고 우리 당이 또 양보해서 산업적 연구는 포함하지 않는 결로,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정부 입장도 아까 산업적 연구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도 응용연구, 기초연구라는 표현에 다 하는 것으로, 산업적 연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꼭 이 명기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대충 이렇게 하면 여야 간에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권은희 위원 잠시만요. 과학적 연구의 개념 설명을 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내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제2조제8호에 보시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김병관 위원 잠깐만요. 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안 된 겁니다.

○김병관 위원 추후에 다시……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추후에 다시 한번 개정안을 같이 논의……

○권은희 위원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김한정 위원 벌칙 조항.

○김병관 위원 해야 되면 제가 벌칙 조항은 아예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윤재옥 위원 당연하지. 그건 아까 빼는 걸로 정리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니까 김병관 의원안은 대안에서 빼야 된다고……

○윤재옥 위원 그렇지.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잠깐만, 그러면 19항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20항은 빼시고 19항까지만 의결하시면 됩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소정의 기간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단체에 추천권까지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 조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 있으면 추가 설명을 위원님께 좀 드려 주시지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하인호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소비자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사업자단체에서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위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개정안에서 일부 받아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된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빼고 두 경우, 소비자단체·시민단체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추천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단체의 추천이라는 것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하인호 아무래도 전문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 아니,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은 자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하인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다른 위원의 자격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게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겁니다, 위원님.

○윤재옥 위원 아니, 그게 법문에도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페이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김한정 위원 법률안 대안이요?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윤재옥 위원 그 조항을 봐야 돼. 권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권은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업무 담당자로서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이 3년 이상 임원 관련해서는 왜 소관업무 규정이 없고 그리고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인데 또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이 조문을, 대안을 다 배부했나요?

○입법조사관 정연수 예, 다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것 봐야 돼.

○김한정 위원 잠깐만, 이 수정 의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출처가?

○김병관 위원 지금 개정안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예.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종전의 논의 때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지금 권은희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격을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렇다면 이 7조의2(보호위원회 구성 등) 2항의 위원 자격을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 하면 명확하게 공무원도 3급 이상이어야 되고 판사·검사·변호사도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하는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강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기존의 수정 의견 대신 인재근 의원님 안에 있는 7조의2 2항이 반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권은희 위원님께서 그 조문을 보시면서 3호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서 '재직'과 '추천'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자격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업무 하나로 규정이 돼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그리고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업무 그리고 민간 기업의 실무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해서 위원에 있어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성을 자격으로 또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자격은 관련 업무가 전부 개인정보 보호 업무예요. 그리고 단체에서 추천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한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격 요건을 외국의 입법례처럼 세분화해서 소비자 보호, 정보처리기술 또는 민간 기업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실무에 관해서 업무를 한 자 등으로 해서 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격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또 지금 제안을 이렇게 하시면……

○김병관 위원 지금 인재근 의원님 안에 있는 단체 중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게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맞습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김병관 위원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좋고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첨언을 하면 3호의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보다도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년으로 하든지. 위에도 3년이고, '임원으로 3년 재직하였거나' 여기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3년이라고 명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추천하기 직전에 그냥 개인정보 업무 담당한 사람도 올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런 취지는……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3년 정도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윤재옥 위원 담당했던 사람, 그 정도는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다 같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권은희 위원님의 취지는……

○윤재옥 위원 아니, 권은희 위원 취지가 아니고 이건 내 개인……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래서 '3년 이상 임원 재직자거나 이들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들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그런 식의 의견을 주신 거지요?

○윤재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권은희 위원 어떤 식으로?

○윤재옥 위원 이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권은희 위원 3년은 너무 짧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한 활동 종사자를 15년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도 10년인데……

○윤재옥 위원 하여튼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걸러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정도 하면……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정리를 하십시오.
재직기간 3년 이상 이 부분을 포함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지금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다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권은희 위원 추가적으로 임기 관련해서 3년에 연임 1회 형식으로 규정이 됐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위원들의 임기가 보통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저희는 일단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위원회는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공정위하고 금융위하고 원안위, 방통위까지 똑같습니다.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고,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 3년에 1회 연임.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 부분도 공정위나 방통위에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내용이 이미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계속)

(15시00분)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아까 제가 제출한 의견에 변화가 없는데요.

○윤재옥 위원 변화가 없어요? 김민기 위원님이 처리하자고 그랬어.

○김병관 위원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정부나 수석전문위원께서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돼 있는 법안 4조에 보면 제목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회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유사한 소방동우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 이런 법들은 ‘회원’이 아니고 ‘회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되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당연 회원으로 의무 가입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검토가 된다면 다른 법처럼 제목을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걸 위원님 지적대로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 제목을 ‘회원의 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영호 위원 차관님,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은 한 6만 200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그냥 일반 소위 친목단체로서 조직이……

○김영호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은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각자 회비로?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회비로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런 취지는 이 법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다른 친목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우회는 지금 지원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경우회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이런 모임 같은 것, 조직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지금 재향군인회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참조가 된 위원회라는 게 군인회, 경우회, 소방동우회, 교정동우회 이래서 약간 제복 공무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 법률 심사 자료의 법안에 보면 제14조(재정)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퇴직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의 운영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취지는 공익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공익사업 부분도 범위가 대개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조금 지급 항목을 뺀다면 저는 이 법안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동우회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회원의 친목, 그다음에 단합, 국가에 대한 봉사 또 공익 활동을 해 나가면서 충분한 신뢰가 쌓였을 때 이 문제는 검토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금 부분만 조정한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핵심은 그 부분 같아.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말이지요, 방금 김한정 위원님이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조정하면 여당도 충분히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이 부분에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우회의 공익적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공익적 사업…… 그러니까 지방행정동우회가 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으로 한정을 좀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입장은?

○**김한정 위원** 거들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의 제안에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친목단체가 공익사업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면 이 문제는 도리어 장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빼고 가자는 이야기지요.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채익 위원장님 말씀하고 김한정 위원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김한정 위원님은 재정 지원 부분은 들어내고 자격만 아까 정부에서 이야기한 중앙 행정부 공무원은 빼고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 지원 없이 그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채익 위원장님 말씀은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 넣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한정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한정 위원님이 양해하는 수준에서 하려면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맞습니다. 그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김한정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14조의 제2항을 들어내면 15조도 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4조까지만 있는 법률이 되거든요.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처리를 하시려고 하면 그것까지 일단 근거 법만 만들어 놓고 재정 지원 부분은 추가적으로……

○**김한정 위원** 아니, 왜 14조를 다 들어내야 됩니까? 14조(재정)은 회원의 회비……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니, 14조의 2항을 들어내면……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2항이 지금 현 단계로서는 좀 더 성숙한 게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맞습니다.

14조 2항을 들어내고, 그러면 15조는 자동적으로

로 들어내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4조 2항을 들어내면 15조는 14조 2항에 걸리는 조항이니까 들어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한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 단체에 이런 국가보조금이나 재정이 들어가서 관련 사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도 공익적 기능, 예를 들어서 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의 교육 사업을 일정 부분 감당한다든지 또 퇴직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이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공익적 사업을 자치단체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운영비로 쓴다든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아니라 공익사업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하면……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14조 2항을 통째로 들어내 버리면 이 단체가, 사실상 핵심 내용이 빠지는 부분이니까 우리 김한정 위원님 말씀을 살려 가지고 ‘동우회의 운영’ 부분을 좀 빼내고 ‘동우회의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살리시지요. 그냥 다 들어내면 또 그렇고.

차관님도 ‘동우회의 공익사업 등’의 ‘등’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해 놓고……

○김한정 위원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김성태 위원 결론은 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방단체……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거기를 공익적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불확정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그런 정도로 하셔야 제한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케이, 좋아요.

○김한정 위원 ‘공익적’도 아니라 ‘공익사업에’.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김한정 위원 ‘등’ 없습니다. ‘공익사업에’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김한정 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소위원장 이채익 예, 사업에 한하여.

○김성태 위원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그렇게 살려 나가면 되지.

○소위원장 이채익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김병관 위원 잠시만요, 정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동우회잖아요? 동우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사업을 규정하는 게,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제로 하지만 동우회에 대해서 사업을 정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친목단체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에 논의하실 때 기존에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가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친목단체로 등록이 돼도 해당 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 말고 이 근거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보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통한 공모 방식에 의한 사업비 지원과 달리 사업 보조를 지방동우회에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추론컨대.

그래서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큼니다, 작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지방행정과 관련돼서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다 선배님들이 되시긴 한데 이 부분이 다른 동우회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김한정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는 신중 검토하되 필요하다면 공익사업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는데 ‘국가’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이 대부분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으로 해서 쪽 진행을 해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 쌓이고 조직이 잘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또 추가 개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중앙회는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국가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김성태 위원** 중앙회는 또 죽으나 사나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채널을 빼 버리면 안 되지.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국가’를 넣어야 되겠네요? 넣고.

○**김성태 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김한정 위원** 행안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하시는 쪽으로 하면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우회의…… 제6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제6조의 기능에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1호에서 3호까지는 공익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4호부터는 친목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따다가 ‘제6조 1호 내지 3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해 주시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예산은 국회의 권한이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케이,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6조 1호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사업’ 이 세 가지에 한해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소위원장 이채익**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김한정 위원** 아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걸 좀 분명하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는 거지 지방공무원동우회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분명히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것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최소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1호·2호·3호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시로 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 지방행정 발전,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로 보는 거고요. 그것을 법에 이 동우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법률을 꾸며 주시면 좀 타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한정 위원** 반복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6조 1항에 적시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안 들어와서 예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가령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답변은 아니지만. 대구시하고 광주시하고 이렇게 지금 영호남 무슨 행사 하잖아요. 달빛동맹인가 뭐 있잖아요. 가령 그런 것을……

○**김한정 위원** 그것을 왜 지방공무원동우회 조직에서 굳이 나서서 해야 됩니까?

○**김성태 위원** 대구시나 광주시가 지역 정서가 좀 세니까.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정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김성태 위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김한정 위원** 예시를 좀 해 주세요. 좀 정확하게 해서 뭘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부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니까 예를 들면 자치단체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김한정 위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왜 지방공무원동우회 조직이 나서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퇴직자 모임들이 자신들의 회비를 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공익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민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걸 조직해 가지고 국가한테 세금 달라고 합니까? 보조금 지급하고 운영비 달라고 하고 사업비 달라고 합니까? 왜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평생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온 사람들이 동우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국가보고 또 손 벌리는 일을 왜 정부에서 거들고 있는 난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정확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공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이 아닌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증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무슨……

○**소위원장 이채익** 김한정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좀 정확하게 말씀해야 될 것은 이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동우회의 재정을 지금 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오버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동우회의 재정은 분명히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다 충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부분을 예시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은 ‘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이것을 저는 지방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예를 들어서 영호남의 여러 가지 공무원 교류 사업을 현직 공무원 사회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방행정공무원동우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로 봐야지 이것을 구체적 사업으로 한정지어서 딱 이렇게 재단하는 것도 무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진정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재정 이 부분은 추후도 추후도 국가 재정이나 자치단체가 동우회 사업의 사적 운영비나 사적 친목을 도모하는 데는 절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분명히 마련하고, 우리가 애기했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운용의 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오늘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5개의 동우회법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운영되고 있는 동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있지요.

○**김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다루는 법 말고도 국세동우회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동우회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면 똑같이 제정을 하게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우회가 이왕에 이미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회원의 의무 가입, 그래서 그것은 아까 지적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재정인데 국가 재정에 대한 투입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지금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동우회들과 관련된 법을 우리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우회 친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걱정한다고 아까 정부에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조문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과 관련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이 이 법의 제안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입법이 아니고 의원 입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기왕에 있던 현재 5개의 법은 약간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있는 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드는 부분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동우회도 있고 한국은행 퇴직자분들도 계시고 관세청 퇴직자분들도 계시고 그 동우회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국회에 요청할 때마다 이 법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김성태 위원**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회가 법안 합의를 하나도 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상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고민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법안을 같이 심사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는 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완전하고 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아마 정부의 입장이 웬만큼 정리된 그런 마당이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정부 입장을 제시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이 법안은 오늘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통령령이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다시 국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법이니까 오늘 합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또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 선상에서 마무리하시지요.

너무 위원회가, 법안이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소위원장 이채익** 아까 정리된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1항을 빼고 2항, 3항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2항·3항을 넣어서, 그러니까 1항 부분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넣고 3항을 2항으로 넣고……

윤종인 차관님, 애기 들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6조 1호 내지 제3호에서 1호를 빼기 위해서 제6조 제2호 및 제3호, 즉 ‘지방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소위원장 이채익**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법은 여야 의견을 좀 더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고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위는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오랜만에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소관 법률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루는 법안 말고도 저희 확정위 관련하고 정치관계법 2소위 논의 잠정 합의 사항이라든가 국회 지적 사항, 실무 사항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 발의)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15시29분)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희 이번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법안이 4건인데 사실상 조문은,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은 세밀하게 나누어서 네 가지입니다.

왼쪽 부분의 개정안 부분을 잠깐 보시면, 먼저 현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갑윤 의원안에서는 지금 그 여론조사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보도할 사항에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일시·대상·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안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금 추상화해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때에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는 사항,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공표 시에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현행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이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갑윤 의원안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응답률을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으로 주셨는데, 현행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안은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등록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질문지와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의 보관기간이 현재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보관기한은 선거일 후 10년까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강효상 의원안은 선거여론조사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하고 위반 시에 징역 3년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페이지 검토의견 하단 부분입니다.

장제원·정갑윤 의원안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규정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갑윤 의원안에서와 같이 정당선호도나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할 경우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선호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하는데 정당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당선호도 등을 묻는 것을 질문하게 함으로써 조사자로 하여금 개별 여론조사에 대해 정파적 판단을 하는 등 이런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성중·강효상 의원안에서는……

○김성태 위원 검토의견 내용은 전부 다 자료에 있으니까 생략하세요.

○전문위원 정성희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박성중·강효상 의원안에서와 같이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장제원 의원안에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다른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시행일이 있는데 이것은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법 시행 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2019년 4월에 있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2소위에서는 일체의 자료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과 자료 보관기간 6개월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우선 여론조사 기준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하는 안은 여론조사 기법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응답자 지역 및 정당번호 분포를 함께 공표하는 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지의 여부하고 신문지면, 방송 분량 제한 등에 따른 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등록 자료를 5년간 의무 보관하는 안은 자료 이관이라든가 저장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최소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여론조사 자료 보관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안은 여론조사기관의 수용 한계, 그다음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소시효 연장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차장님, 지금 현재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한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이후 6개월이지요, 현행은?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김성태 위원 이걸 지금 5년 하자는 의원도 있고 10년 하자는 의원도 있고 안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두 분이 낸 것은 다 10년입니다.

○김성태 위원 홈페이지 등록 자료 부분만 5년 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등록 그것만 5년입니다.

○김성태 위원 6개월의 보존기간은 나중에 시비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너무 턱없이 짧아요.

그렇다면 중선위에서 검토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보관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저희는 지금 박성중 의원안으로 해 가지고 선거일 후 10년 안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론조사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 여론조사기관이 이걸 수용하는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연장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거고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보통 법적 다툼이 생겨 버리면 공소시효기간이 그냥 지나 버려요, 6개월 일 때는. 그렇지요, 보존기간이 6개월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지나면.

○김성태 위원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선관위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선관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논의가 빨라질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채익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분이 중앙선관위의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입법은 꼭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론조사기관과 대충, 만약에 조사 자료 보관기한을 10년으로 했을 때 물리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별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기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취합한 것은 없는데요. 최근에도 국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과다표집이라든가 표본추출 틀의 편향, 그다음에 질문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관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의 의견으로는 표본추출 틀과 원자료 제출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라든가 조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장님,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지금 현재 선거구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역 언론에 기사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관한 결과를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어졌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좀 반영을,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김영호 위원 이 입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과연 이 법이 처리됐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큰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데 보관기간 10년으로 연장한들 본질적인 문제를 과연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여론을 왜곡한다든지 이런 것은……

○김영호 위원 선거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지금 입법 발의된 안 중에 10년 연장안을 두 분이 하셨고요.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기관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을 가져가려면 공소시효하고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채로 하게 되면 전혀는 아니겠지만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으로 했을 때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부담은 주는데 6개월이 지나면 처벌은 못 하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료를 여론조사업체가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게 작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업체가 우리가 익히 아는 여론조사업체들도 있지만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개별 기업들한테 10년 동안 보관하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한 것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같이 제출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보관하도록, 예를 들어서 보관기간을 똑같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좀 지나친 국가 규제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은 또 여전히 감안이 돼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오늘 처음으로 이 법안을 한번 심사해 봤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 공히 여론조사기관의 투명성 확보 또 심사 자료의 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

양선관위가 이 업무를 오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음번 심사 때까지 우리 의원 입법을 존중해 가면서 중앙선관위의 대안을 좀 만들어서 법안소위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좀 더 신속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이 문제를 너무 공소시효하고 연관하여 검토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좀 더 공정히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형사처벌을 못 하더라도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하게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이 됐다고 하면 여론조사기관의 공신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거법 공소시효하고 연계하지 말고 여론조사 관련 자료들을 어느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관위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차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김한정 위원 오늘 의사일정 시간이 많이 촉박하긴 한데요. 해직공무원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돼 왔었는데 이게 오늘 의사일정 68항, 69항으로 배치되어 있던데 오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윤재옥 위원 4시 반까지밖에 못 해요.

소위 가야 되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예결소위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확정은 안 돼 있고 부르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우선 심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관님 일정을 봐서 오늘 이것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법안소위 할 때마다 계속 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법안의 접점이 많이 찾아지고 있으니까……

○윤재옥 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접점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김한정 위원 최대한……

○김민기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계속)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3849)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0838)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

발의)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
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 발의)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5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2.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6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0분)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64항까지 37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일단 소위 자료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관 편입니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에 31년 만에 실질적인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전부개정안의 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주민 참여 확대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 집행기관과 관련된 부분, 네 번째 중앙-지방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1조(목적) 규정에 '주민 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근본 원리를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한 구성을 주민투표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8조의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와 관련해서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에 따라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고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도록 하면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현행 시도 500에서 300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에서 200으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200에서 150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감사청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4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42조에 정례회·임시회 운영, 위원회 설치, 의안 발의 등에 관한 지방의회 운영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윤리 규정을 강화하였고, 시도의회의장이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인사권을 갖도록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기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104조에 명시하였고요.

네 번째로 중앙-지방 협력 등에 관해서는 135조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18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점을 규정하였고요.

185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에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조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별시 명칭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많은 내용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먼저 1조(목적) 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규정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홍의락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협력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원리에 기반한 지방자치행정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조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정부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홍의락 의원님 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수평적·협력적 관계 외에도 위임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포괄적 지도·감독 관계가 함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기본적인 관계라는 중립적인 용어 사용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심사를……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도 참여하고 이렇게 심사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일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시지요.

○**김민기 위원** 설명하고 의견도 좀 듣고요, 정부 측 의견 하고 한번 돌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정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특별히 주실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1회독 스터디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완전히 비쟁점

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은 심의해서……

○**윤재옥 위원** 어쨌든 심의를 하더라도 중요한 법이고…… 위원님들이, 교섭단체 다 참여해서 심사하는 게 좋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안 나오면 또 심사 미뤄지고……

○**윤재옥 위원** 그때는 권리를 포기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렵게 지방자치법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진일보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계속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정부안은 지방의회·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에 따라 현행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인 기관 구성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지방행정의 상이한 지역 여건, 다양한 주민 의사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의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변경으로 개정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 제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세 번째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10조입니다. 사무배분 원칙 규정 및 준수의무 부여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분권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복배제 원칙, 보충성 원칙, 자기책임성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옮겨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래 분권법에 규정되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및 자치권을 보장하고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제도 개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 규정만 남겨두고 청구권자, 청구 대상 등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상당수의 중요 사항이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이 필요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는 법안의 제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어서 명칭이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의 제목을 ‘주민조례발안’으로 수정하고 만일에 이 법을 심사하면서 별도 법안이 제정·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현행 조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정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경우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칙은 상당수가 내부 행정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주민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만 규칙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안 20조,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시도의 경우 현행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의 경우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는 안이고, 금태섭 의원안은 시도의 경우에는 50명, 인구 50만 이상은 30명, 시군구의 경우는 20명으로 더욱더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권 기준 연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19세에서 정부안과 김관영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모두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고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수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청구 장벽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주민감사청구 남발에 따른 질 저하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또 기준 연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선거권 기준 연령은 19세지만 선거권과 주민감사청구 등은 별도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 선정 규정,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분권특별법에 의해 시범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

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위원 위촉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분권특별법과 동일하게 위촉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해서 정부안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 그 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양 개정안 전부 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우려는 취지입니다만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을 거고 국가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등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수석전문위원실의 수정 의견에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민자치 조직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 강화라는 지방자치법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 정부안에 찬성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지자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방자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런 정보 제공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주요 자치 정보의 공개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해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공보 효력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정부안은 조례·규칙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며 전자공보는 종이공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실제 전자공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전자 공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다음으로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를 의정……

○소위원장 이채익 잠깐만요. 우리 회의 중에 제주도에서……

○김한정 위원 좀 기다리세요. 답변 다 끝날 때까지 딱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윤재옥 위원 아니아니, 그냥 악수만 하고 가시는……

○김한정 위원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일단……

○윤재옥 위원 마무리……

○김한정 위원 아니, 회의 진행 중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앉아 있어요, 저기.

○윤재옥 위원 30분 걸리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이 동의했잖아요.

○김한정 위원 좀 앉아 계세요. 발언 마치고 하세요.

○윤재옥 위원 이걸 마치려고 하면……

○김한정 위원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원희룡 지사, 자리에 앉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윤재옥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김한정 위원 지사님, 앉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회의 진행 중이에요.

마무리, 정리하세요.

○윤재옥 위원 김민기 위원이 동의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이채익 김한정 위원님, 김민기 위원

님한테 제가……

○**김한정 위원** 김민기 위원도 위원이고 나도 위원이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와 가지고……

○**윤재옥 위원** 정회합시다. 이것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입장도 서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지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무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합시다.

○**김민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4·3 특별법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먼 데서 오셨으니까 또 비행기 시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정부를 대표해서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마무리하고 해도 되지 뭐가 그렇게 숨이 넘어가요? 나는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 발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 발언하는데 그것을 잘라 버리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발언을 자른 것은 아니고……

○**윤재옥 위원** 아니아니, 발언을 자른 게 아니고 다음 항목으로 설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가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오늘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주의 현안을 갖고, 제주 4·3 특별법의 시급성과 도민들의 여러 가지 민심을 우리 국회에 오늘뿐 아니라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사님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해서 잠깐 와서 제주시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안전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잘 심의해 주시기를……

○**김영호 위원** 아직 상정이 안 됐는데요.

○**김한정 위원** 상정이 안 됐어요.

○**김민기 위원** 그것은 하려고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심의 안전으로……

○**김영호 위원** 심의 안전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약속을 받으세요, 오늘 내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비행기표 값 들여서 오셨는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상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저희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요 염원을 잘 반영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약속하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우리가 여야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오늘 처리하시지요, 비행기표 값 들여서 오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약속을 받으세요, 약속을.

○**김한정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제대로 하세요, 앉아서.

(웃음소리)

이채익 위원장님이 오케이만 하면 상정이 돼요, 지금.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심사위원들께 인사드리려고 온 겁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협조를 요청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진행 중이신데.

○**김영호 위원** 그러면 언제 올려 주실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받고 가세요, 언제 올릴지. 오늘 상정했으니까요.

○**윤재옥 위원** 하여튼 지사님이 여기까지 오신 정성을 우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정성의 표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안 올라오면 지사님을 무시하는 처사로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약속만 하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를 의정비심의위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중에 여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비를 결정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명칭에 관해서는 정부안과 대부분의 안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있고 임종성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좌직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입 범위 및 세부 규정에 관해서 정부안은 시도 및 시군구의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안들은 전부 시도의회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입 규모에 관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미애 의원 등은 재적의원 총수, 임종성 의원은 시도의원당 1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하여 지난번 19대 국회에서 일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의회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인력의 정수에 관해서는 재적의원 총수 등과 같이 그 규모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각 의회의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치적 중립 규정

등은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종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 제기되었던 것처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개인 보좌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정서라든지 아니면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총수로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정치적 중립 규정을 법률로 하자는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에는 찬성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운영 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특별위원회 설치, 의안발의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의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에 의장이 위탁하도록 하며 운영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임의 설치하게 하고 있고요.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세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통제의 객관성 확보 및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국회법도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나머지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사무 범위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군구의회도 인력 운영의 자율성 부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시군구의회의 사무인력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독립적 인사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시도의회에 도입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이후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대해서 병합해서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지방의회의 표결 방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의원안은 본회의 표결 시에 투표자,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고 무기명투표 대상에 의장·부의장 선거 등 인사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되 지방의회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표결 방법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정 의견에 대해 수

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 조항입니다.

김영호 의원께서 지방의회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외에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정 의견에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은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의 존속 기한을 임기 개시 이후 30일까지 두고 있으며 인수위에 참여하는 위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장 인수위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민선 6기 지자체장이 교체된 지역 106개 중에 61개 지역, 약 58% 정도가 인수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운영 규정이 없어서 인수위 규모가 과다하게 운영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인수위원 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위원 외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참고해서 지자체별로 규모에 따라 또 혹은 필요한 경우에 인수위원 외에 전문위원 등을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정 의견에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내지 2명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부지사 1명, 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구 300명 이상이거나 면적 1만 5000 km² 이상인 경우 2명을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기관장의 직위는 통상 조직구조에서 1개 또는 2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단일차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18개 행정 각 부 중 5개만 예외적으로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을 낼 때 현재 행정부지사가 평균 11개 실·국·본부를 지휘 통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례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1명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신중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중앙-지방 협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거 마련입니다.

정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방, 지방 상호 간 적절한 재정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활성화 규정입니다.

정부안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협력에 따라 예산 절감 등을 이끌어 내는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행정협의회 구성 시에 현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행정협의회 구성이라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구성을 지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고로 간소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전·복지·경제 체제 등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상급기관의 비구속적 조언, 권고, 지도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 상급기관의 조언, 권고, 지도에 대해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광대훈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방분권협력회의, 김영진 의원안은 중앙·지방협의회, 이철희 의원안은 지방분권국정회의 등 명칭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능들은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지자체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방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위법한 사무처리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군구 의회의 의결이 위법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사무는 대부분 행정 서비스로서 주민의 생활상 편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자치사무의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함들이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다음으로는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경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인구 100만 이상 또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주간인구, 사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이고 도청 소재지 등 인구 요건 외 행정수요자 수라든가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는 타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때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이고 특정한 요건들, 산업적·경제적인 고려나 지역 균형발전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특례시를 부여하는 안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김병관 의원안이나 다른 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수요자 수의 산출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은 통계청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입법례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하위입법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식으로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삼 의원안이나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군에 특례군을 부여하는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례군 지정 및 특례시 부여에 관해서는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건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상 50만 이상에는 61개, 100만 이상에는 14개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처럼 일단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100만 이상에 대해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정부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상 특례가 시에만 부여돼 있고 군에는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는 기존에 특례가 부여되는 시에 대해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자는 취지인데 특례군 제도 도입은 군에 부여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일반적인 선행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지금으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정부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과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자체 구역은 구성 지자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하며 규약에는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지자체의 장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특별지자체 의회는 구성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지자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일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제도가 이미 지방자치법상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준용한 조항 중 주민소환제도는 본인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로서 특별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행정협의회 제도와는 달리 별도 법인인

특별자치단체를 통한 보다 강력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조문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주민소환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20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1991년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거의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을 오늘 첫 심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지방자치의 순기능·역기능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또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꼭 20대 국회 안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해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행안위 법안소위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일독 자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진척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민기 위원 오늘 내용을 정부 측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심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다음번 법안심사 때는 본격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채익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끝내실 건 아니시지요?

○김한정 위원 차관님, 바로 가셔야 됩니까?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아직……

○김민기 위원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김한정 위원 오늘 의사일정을 4시 반에 마치고 합의된 겁니까? 차관님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대충 그렇게 마치고도록 할까 합니다.

○**김한정 위원**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에 몇 번 회의했다고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또 회의를 끊어 버리고, 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에 이 법안소위의 공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회의 운영이나 배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자정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

정기국회 마감까지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법안이 몇 개입니까? 오늘도 리스트에 올라온 것만 111개인데 이렇게 중간에……

차관 이석 때문에 심사를 못 한다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처도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김한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밤을 새워서 법안소위를 하고 또 실적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오늘은 아까 오전에 차관님이 4시 반에 예산소위 참여 문제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그랬는데 다음 회의부터는 좀 더 많은 부분을 갖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해직공무원들이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시고 아마 각 의원실에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직공무원들에 대한 법안 심의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오늘 하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을 하고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심사돼야 되는데……

○**김영호 위원** 의결정족수가 또 안 되나요?

○**김민기 위원** 우리밖에 없으니까……

○**김영호 위원** 의결정족수가 또 안 되네.

○**소위원장 이채익** 오늘 심의가 좀 현실적으로……

○**김민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차관님께서 예결위로 가시기 전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당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논의를 19대 때도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좀 다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오늘 회의가 4시 반에 마친다는 통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 이석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차관님은 이석을 언제 하셔야 돼요?

○**김한정 위원** 아니, 차관님이 이석하시게 되면 차관님 대안으로 누구 국장님 와서 앉아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 누구 한 분만 계시면 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국장은 와 있습니다. 정부 측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차관 이석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냉정히 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잠시 정회하시고요.

○**김한정 위원**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일단 잠시 정회하였다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오늘 계속 심사해야 할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계속 심사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법안소위 위원님께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법안소위가 매우 효율적으로 또 사전에 여야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시간을 적절히 잘 조율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관련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현안 관련

법안이 우리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 은 희	김 민 기	김 병 관	김 성 태
김 영 호	김 한 정	윤 재 옥	이 채 익
홍 문 표			

○청가 위원(1인)

이 재 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 의 섭
전 문 위 원	정 성 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 관	윤 중 인
지방행정정책관	서 승 우
새마을금고중앙회	김 기 청
전 무 이 사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차 장	김 세 환
---------	-------